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	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18.5.31.(목)
책임자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김기한(02-2100-2990)	담당자	양병권 사무관 (02-2100-2992)	

제 목 :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TF 구성 및 운영

-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·업계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「카드수수료 관계기관 TF」를 운영
 - TF에서는 現 제도 보완방안 및 근본적 체계 개편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
 - TF 논의 등을 바탕으로 금년말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마련

□ 카드수수료율은 '12년 여전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하여 3년마다 조정

○ 3년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금년 중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*을 거쳐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'19.1월 시행할 예정

* 여신금융협회는 4월부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카드사 원가 분석 작업을 진행중

□ 이와 관련하여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비롯하여 카드수수료 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요구*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

* 예 : 소상공인들은 우대수수료 대상 확대 등 수수료 경감을 요구 하고 있으며, 국회에서도 수수료율 법제화 등 카드수수료 관련 여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

□ 카드수수료 문제는 소비자, 가맹점, 카드사, 뱅크 등 다양한 경제 주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며,

○ 특정 부문의 부담 경감은 다른 부문의 부담 증가로 연결되는 제로섬 구조로 인해 개별 사안별 접근시 문제 해결에 한계

□ 또한, 현행 카드수수료 제도는 의무수납제 등 관련 제도와 연계*되어 있으므로 결제시장 환경 및 여러 제도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

* 예 : 카드 의무수납제 → 가맹점의 수수료 협상력 제한 → 적격비용 수수료 제도 도입

□ 이에 관계기관·업계 및 관련 전문가* 등으로 구성된 TF 운영 (팀장 : 금융위 사무처장)을 통해 종합적·객관적으로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검토·마련할 계획

* 금융위, 기재부, 중기부, 금감원, 금융연구원, 여신금융협회, 한국공인회계사회, 민관 법률·회계·소비자 관련 전문가 등

① TF 논의는 크게 현행 카드수수료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*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**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

* 예 : 조달·대손·마케팅비용 등 적격비용 산정방식 타당성 검토 등

** 예 :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, 소비자 및 정부의 카드수수료 부담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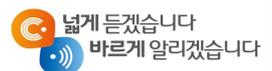
② 또한, TF 논의에 앞서 금융연구원 주도로 정책연구 및 공청회를 추진하여 TF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

③ 제도개선 과제들은 정교한 원가분석을 토대로 카드사의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하여 추진 (수수료율 재산정 작업과 연계)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① 현행 수수료 제도내에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기

①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을 확대(예 : 5억원 → 10억원)하는 방안

② 적격비용에서 조달비용, 대손비용, 마케팅비용을 제외*하는 방안

* 現 적격비용 항목 : 조달비용, 대손비용, 마케팅비용, 뱅수수료비용, 일반관리비용
→ 조달·대손·마케팅비용은 가맹점이 아닌 소비자 부담이 타당하다는 입장

③ 카드사 원가 공개 등 카드사와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등

② 현행 카드수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체계 개편 방안도 제기

① 의무수납제를 폐지(전면폐지 또는 소액결제에 한정)하는 방안

* 의무수납제 폐지시 가맹점의 수수료 협상력 제고 → 수수료 인하 효과 기대

② 저율(예 : 1.5% 이내)의 단일 수수료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

③ 소비자 카드수수료 분담 또는 정부 예산을 통한 수수료 지원 등 가맹점의 부담을 소비자와 정부가 나누어 부담하는 방안 등

* 소비자(신용 이용, 결제 편의), 정부(세원 확보)도 카드결제의 편익을 향유

□ 카드수수료 관련 여전법 개정안이 제20대 국회들어 총 14개안 발의

①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및 우대수수료율 수준을 법제화하거나, 수수료율 상한을 규정하는 등 수수료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

* 현재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에, 우대수수료율은 감독규정에 위임

② 가맹점의 매출액뿐만 아니라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

- 병·의원, 약국, 사회적기업, 대학교등록금, 소액결제업종 등 특정 업종을 우대가맹점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과,

- 매출액에서 각종 세금 등을 제외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우대가맹점을 선정하는 방안 등

③ 영세·중소가맹점, 택시사업자 등의 소액결제(1만원 이하)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

④ 온라인 카드결제시 PG사가 수취하는 결제대행수수료(PG사가 수취)도 카드수수료와 동일하게 규제*하는 법안

* 적격비용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수료율을 산정하여야 하며, 영세·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해야 함

⑤ 가맹점 단체교섭권 명문화, 우대수수료율 산정시 가맹점단체 의견수렴 의무화 등 가맹점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 등